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0(월) 평창군수(건설과장)
-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0. 25) 상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석명준 건설과장)

#### 가. 제안이유

- 태풍·호우 등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군·경찰서 과장급이상 공무원, 주민대표(군의원) 또는 재난 방재관련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인명 피해여부를 결정, 복구계획에 반영 요청
-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정호)

가.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원여부 판단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1부 끝.**